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98호, 2024. 2. 13. 공포, 2025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유로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·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,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·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 운행제한 사유로 규정(안 제5조)
-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(안 별표 1의3 제2호 사목·마목·바목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·제3호, 별표 2 제2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·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의 안전 및 공중의 안전 확보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없음